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724
----------	------

제안연월일 : 2013. 4. 30.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12년 5월 30일에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5월 30일에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5월 30일에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11일에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18일에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1일에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8일에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5일에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개정안은 2012년 8월 27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나. 2012년 9월 5일에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9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다.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라. 2012년 11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애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애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 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확대”를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를 “고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p>부칙 <제7185호,2004.3.5.>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13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u>른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u> 부칙 <제7185호,2004.3.5.> ② (유효기간) ----- <u>2018년 12월 31일</u> -----.</p>
--------------------------------------------------------------------------------------	-----------------------------------------------------------------------------------------------------------------